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·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○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비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항 신설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(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)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·관리계획(이하 “응급의료지원계획”이라 함)을 매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, 해당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·홍보 및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·관리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함.
- 안 제7조(장비의 관리)에서는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구청장이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비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서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·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응급의료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“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”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“심폐소생술 교육 계획”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기에 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 시 두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5. .

발 의 자 : 우경란, 신흥식, 이성수
최봉희, 유승용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상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하는 규정이 미비함.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, 보다 실효성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(안 제6조)

나. 장비의 관리(안 제7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5. 1. ~ 5. 6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)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 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계획(이하“응급의료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

- 1.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2.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에 관한사항
- 3.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)</u> <u>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계획(이하 “응급의료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</u> <u>1.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 <u>2.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에 관한사항</u> <u>3.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4.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.</u>
<u>제6조(장비의 관리) (생 략)</u>	<u>제7조(장비의 관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</u>

<u>제7조</u> ~ <u>제9조</u> (생략)	<u>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제8조</u> ~ <u>제10조</u>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